

이 회보는 공문과 동일하므로 신속 정확히 처리



남하면 회보

제 2018 - 50호
2018. 12. 19. (수)

본 회보는 일반 공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각종 행정지시사항을 종합 시달함으로 공문서 감축과 소비절약 및 행정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전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람

반 장	반 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이 장

남 하 면
(www.namha.go.kr)

남하면사무소 전화번호

- 남 하 면 장 : 940-7700
- 복지지원담당 : 940-7720
- 산업경제담당 : 940-7740
- 총무담당 : 940-7710
- 개발담당 : 940-7730
- F A X : 940-7709

이장회의 시간(오전 11:00, 면사무소)

- ☆ 회의일 : 첫째, 셋째주 수요일 ☆
- ☆ 등청일 :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차 례>

□ 총무담당 소관

1. 관내 동향보고 및 협조사항 안내	1
2. 남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연말총회 안내	1
3.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홍보 협조	1
4.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1
5.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안내	2
6.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안내	3
7.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안내	3
8.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4
9. 거창창포원 읍·면 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5
10.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운송처리 종료 안내	6
11.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케이블TV 결제 안내	6
12.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안내	7
13.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8

□ 복지지원담당 소관

1.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모금 협조	16
2.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 홍보	16
3.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협조	17
4. 주거급여 신청 홍보 협조	17
5.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8
6. 2019년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신청 안내	18

□ 개발담당 소관

1. 동절기 농업생산 기반시설(관정, 양수장)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21
2.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협조	21
3. 동절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권고문 및 안내방송 홍보	21
4.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사전대비 홍보	21

□ 산업경제담당 소관

1. 2019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30
2. 2018년산 쌀 식량작물(밀, 두류, 서류, 잡곡류) 생산량 조사 협조	31
3. 과수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보험상품 가입 안내	31
4. 2019년 원예특작분야(국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안내	32
5. 2018년 가축 통계조사 실시 안내	32
6. 겨울철 축산분야 재해예방 점검계획 및 관리요령 안내	33
7. 무허가 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지원 안내	33
8.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협조 안내	33
9. 외국인근로자의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협조 요청 안내	34
10. 2018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 나눔카드) 대상가구 신청 안내	34
11. 마을별 농산부산물 공동소각 일정 안내	35
12. 산불예방 안내 및 마을방송 협조	36
13.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 안내	37
14. 2018년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37

총 무 담 당

1. 관내 동향보고 및 협조사항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대 상
 - 주민여론 등 민심에 관한 사항 / 주요인사 등 내방
 - 마을, 단체 등 행사 및 경조사에 관한 사항
- 시 기 : 동향 발생 시 수시
- 방 법 : 면사무소 총무담당 연락(☎ 940-7710)

★ 2019년 이장, 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반장 등 변동사항 있을 시 즉시 보고 및 【붙임 1】 서식 작성 후 제출

2. 남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연말총회 안내

[담당: 신용규 940-7712]

- 일 시 : 2018. 12. 21.(금) 11:00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대상 : 주민자치위원 24명
- 주요내용 : 2018년 주민자치사업 결산 보고

3.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홍보 협조

[담당: 김지영 940-7713]

-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없는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료보관 등의 사용 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 후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법 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 소유자에게도 처리 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 협조사항 : 【붙임 2】 홍보물 참조하여 홍보 협조

4.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담당: 신용규 940-7712]

- 부과대상 : 2018. 12. 1현재 자동차 소유자(연납차량 제외)
- 부과현황 : 215건 34,271천원
- 협조사항 : 납부홍보 방송 실시 【붙임 3】

5.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집중모금기간 : 2018. 12. 1. ~ 2019. 1. 31.(62일간)
- ※ 연중모금기간 : 2018. 12. 1. ~ 2019. 11. 30.(연간)
- 모금 목표액 : 3,072,000원(지난해 모금액 대비 10%인상)
- 납부방법 : 마을별 공동납부
- 협조사항 : 공동납부용 지로그지서 수령 후 집중모금기간 내 마을별 납부 협조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바람)
- 마을별 납부금액

연번	통 반	공동납부명	참여세대수 (세대주명부에 등재된 인원)	2018년 납부금액	2019년 목표금액	비고
			계	2,788,400원	3,072,000원	
1	1통1반	대촌마을공동납부	27	181,500원	198,000원	
2	2통2반	신촌마을공동납부	33	180,000원	198,000원	
3	3통3반	안흥마을공동납부	46	285,000원	315,000원	
4	4통4반	아주마을공동납부	18	125,900원	140,000원	
5	5통5반	내곡마을공동납부	16	80,000원	88,000원	
6	6통6반	상촌마을공동납부	30	163,400원	180,000원	
7	7통7반	대곡마을공동납부	26	130,000원	145,000원	
8	8통8반	양곡마을공동납부	28	210,000원	230,000원	
9	9통9반	무릉마을공동납부	72	332,800원	370,000원	
10	10통10반	월곡마을공동납부	25	137,000원	150,000원	
11	11통11반	산포마을공동납부	32	181,500원	200,000원	
12	12통22반	대야마을공동납부	28	160,000원	170,000원	
13	13통13반	오가마을공동납부	7	30,300원	34,000원	
14	14통24반	용동마을공동납부	8	50,000원	55,000원	
15	15통15반	가천마을공동납부	23	115,000원	127,000원	
16	16통26반	자하마을공동납부	23	130,000원	145,000원	
17	17통17반	신기마을공동납부	20	98,000원	108,000원	
18	18통28반	장전마을공동납부	12	50,000원	55,000원	
19	19통19반	천동마을공동납부	15	83,000원	92,000원	
20	20통20반	대사마을공동납부	9	65,000원	72,000원	

※ 참여세대수 : 만25세 미만 세대주와 만75세 이상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수

6.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신청기간 : 2018. 12. 17.(월) ~ 2018. 12. 28.(금) / 12일간
- 지원대상 : 만 5세 ~ 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01~'14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구
 -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지원내역
 - 지원금액 : 스포츠강좌 매월 8만원(1인당 1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2019. 1월 ~ 11월(최소 7개월 지원)
 - * 배정예산 대비 인원수 조정으로 인한 기간 변경 가능
 - * 신규 회원은 카드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2월부터 지원
 - * 2018년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도 재신청해야 함(홈페이지 등록)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www.svoucher.or.kr)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1층) 방문신청 중 택1
- 대상선정 : 2019. 1. 4.(금) ~ 2019. 1. 11.(금)
- 【붙임 4】 신청서 및 안내문

7.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점검대상 : 축산농가(축사, 퇴비사, 퇴비저장시설, 액비저장시설 등)
- 점 검 반 : 거창군청 환경과 수질관리담당주사 외 2명
- 점 검 일 : 우천 시(연중)
- 주요 점검내용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 가축분뇨와 퇴비를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외 노천 무단방치 행위
 - 가축분뇨와 퇴비가 우천 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는 행위
- 적발 시 조치사항
 - 가축분뇨와 액비 및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적발 시 사법처분
 - 기타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 협조사항 :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 홍보 및 안내 협조

8.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이용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모바일(www.15990903.or.kr)
- 운영시간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금) 08:00~18:00
 -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공휴일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08:00~18:00
 -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1일)
- 수거품목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수거기준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 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 품목	가전 제품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가전 제품 외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욕장판, 온수매트 등)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지자체 문의 후 배출

9. 거창창포원 읍·면 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사업기간 : 2018. 11월 ~ 2019. 6월
- 사업내용 : 창포원 내 정각, 원두막 주변 읍·면별 주도 수목, 바위 테마공간
자율적 공간 조성
- 추진일정
 - 읍·면 기증 수목 및 바위 수량 파악 : 2018. 11월 ~ 2019. 2월
 - ★ 읍·면 자체 추진위(주민자치위원회, 이장자율협의회 등) 기증 물품 및 현판(안) 자율 선정
 - 읍·면별 조성 공간 선정(읍면 희망장소 배정) : 2019. 2월 ~ 3월
 - 선정 물품 현장 확인 및 운반·이식 계획 수립 : 2019. 3월
 - 기증물품 이식 및 운반 : 2019. 4월 ~ 6월
- 협조사항 : 마을별 기증할 수목 및 바위 신청 및 현판(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10.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운송처리 종료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집중수거기간 : 2018. 9. 17.(월) ~ 12. 14.(금)
- 수거대상 및 방법
 - 영농폐비닐
 -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송처리 종료로 개인이 직접 수거하여 운반해야 함
<매주 수요일(10시~15시) 공단사업소(위천면 소재)로 반입>
 - 농약빈병(플라스틱, 봉지)
 - ⇒ 한국환경공단 예산 소진으로 유상수거 일시적으로 중지
- ★ 12.19일자로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종료로 그 이후는 반입 안됨
- ※ 환경공단 : 거창군 위천면 당산농공길 46 (☎ 055-943-3072)
-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 ⇒ 마대 등에 담아 거창군 매립장에 반입
- ★ 2018년도 보상은 종료되고 무상으로 반입만 가능(12.31까지)
- 수거보상금

구 분	영 농 폐 기 물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폐비닐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	
보상금액 (kg당)	100~150원	100원	100원	100원	150원

- 협조사항 : 이번년도 반입 못한 물량은 내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참고 바람

11.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케이블TV 결제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추진시기 : 2018년 11월 1일
- 가 맹 점 : CJ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58개사 등
- ★ 우리 군의 경우 현재 (주)CJ헬로가야방송 결제 가능(1855-1000)
- 결제방법 : 각 케이블TV 방송사의 콜센터로 연락하여 월별 전화결제
- 유의사항
 - 케이블TV 방송사 콜센터를 통한 월별 전화결제만 가능
(은행창구/ATM/자동이체/온라인 불가)
 - 11월 케이블TV 청구요금부터 결제 가능(12월 청구요금은 12월말까지 납부)
 - 문화누리카드 환불 및 취소는 당월 내에서만 가능(익월 환불 및 취소 불가)
 - 가전 렌탈요금 결제 불가
- 【붙임 5】 안내문

12.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 ※ 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2. 1. 1. ~ 2012. 12. 31. 출생 아동

○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10.1기준, 10.31까지	11.30까지	12.10까지	12.20까지	12.31까지

□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신청서식은 면사무소 비치)

2. 신청대상

가. 조기입학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 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 1. 1. ~ 2013. 12. 31. 출생 아동

(2014. 1. 1.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나. 입학연기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해로 입학할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2. 1. 1. ~ 2012.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0학년도(2020.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할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

13.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담당: 김지영 940-7713]

- 사업내용 :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3.1.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신청기간 : 2018. 10. 17.(수) ~ 2019. 1. 31.(목)
- 사용기간 : 2018. 11. 8.(목) ~ 2019. 5. 31.(금)
- 지원금액 : 1인 가구(86,000원) / 2인 가구(120,000원) / 3인 이상가구(145,000원)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택 1
 -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 * 대상자 혹은 주민등본상 세대원이 카드사에 방문 및 전화하여 발급
 - 가상카드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거주자에게 추천
 -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센터(남부자번호) 필요
- ★ 2017년 기존 신청자는 자동 신청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단, 정보변경[가구원수, 전출입(가상카드), 사망(2인 이상) 등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 신규 및 정보변경 신청자는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카드는 농협 방문하여 신청

【붙임 1】

2019년 ()마을 반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노인회장 변동사항

반장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 고 (휴대폰번호)

새마을지도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 고 (휴대폰번호)
		남		
		여		

개발위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 고 (휴대폰번호)

노인회장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 고 (휴대폰번호)

()마을 동리장 (인)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

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1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사용용도를 **확인**

사례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사례 명백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울타리(펜스)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사례 조적 폭력배 일당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감종지 등을 단기 임대하고, 임대부지를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처리"** 책임이 있고,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듭니다

* 폐기물 종류 등에 따라 처리 비용이 다르나, 수역 또는 수습역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음



내 땅, 나도 모르게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 방 송 안 >

면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하면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달입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화물차 소유자는 6월 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12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2001. 1. 1 ~ 2014. 12. 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2. 신청기간 : 2018. 12. 17(월) ~ 12. 28(금)

※ '18년도 1차 전국동시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은 시군구 별도 문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및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방문 서면신청

※ 신청문의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24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4. 서면신청 시 제출서류

-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만, 수급 증명서 별도 제출

※ 그 외(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대상은 전산상 조회 가능

5.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6. 선정알림

-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첨부 1】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근로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input type="checkbox"/>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선택)		
	추가확인 사항	<input type="checkbox"/> 장애여부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정
주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근로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input type="checkbox"/>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선택)		
	기타확인 사항	<input type="checkbox"/> 장애여부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정
주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 발급자	동일정보 선택	<input type="checkbox"/> 기존카드발급자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 관계		
	주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동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유·청소년 (회원구분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회원구분” 기초생활 급여 및 차상위,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 “세대주” 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 “세대주”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

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위 임 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 · 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카드발급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휴카드사 발급 및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신한카드사 및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그 외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 ·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이용원 신청 및 카드발급 등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음
-------	---	-----------

※ 본 양식은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이 매우 곤란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용신청을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전국 케이블TV 사업자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문화누리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집에서 간편하게 전화결제를 통하여, 다양한 방송문화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1차 58개사 확대에 이어서,

12월 12일 전국 78개 권역의 케이블TV 사업자(90개사)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티브로드(23개사)는 12월 18일부터 결제 가능하며, CMB충청, 세종지점은
2019년 2월부터 결제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케이블TV사업자 각 고객센터원센터에서 결제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케이블TV 가맹점 결제 문의처◀

케이블 사업자	전화번호	케이블 사업자	전화번호
	1855-1000		1877-8000
	1877-7000		1544-3434
	(서울) 1644-1100 (경기) 1644-2100 (강남) 1877-5000	남인천방송(인천)	1544-0777
아름방송(경기)	1544-1100	서경방송(경남)	1877-6666
금강방송(전북)	1544-5400	광주방송(광주)	062-417-8000
CCS충북방송(충북)	043-850-7000	대구푸른방송(대구)	053-551-2000
JCN울산방송(울산)	1877-9100	KCTV제주방송(제주)	064-741-7777

★ 케이블TV 결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화누리카드 결제는 각 케이블TV방송사의 콜센터로 월별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은행창구/ATM/자동이체/온라인 결제는 불가합니다.
- 2018년 12월 청구된 케이블TV 요금은 12월 말까지 납부 가능하오니, 납부기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2월 이용하신 케이블TV 요금은 2019년 1월 청구됨에 따라서, 2018년 문화누리카드 잔액금으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결제 후 환불 및 취소는 당월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익월로 넘어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3일(주말/공휴일 제외) 후 환불되오니, 12월 20일 이후 카드결제 취소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종료(12월 31일) 후 환급된 취소금액은 자동 소멸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업 취지에 따라 케이블TV 월별 방송요금 및 부가서비스 결제(후납)만 가능하며, **가전 렌탈요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결제 시, 카드정보 외 본인확인을 위한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원센터(1544-34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담당

1.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모금 협조

[담당: 김이랑 940-7722]

- 기 간 : 2018. 11. 20.(화) ~ 2019. 1. 31.(목) / 73일간
- 슬 로 건 :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 모금대상 : 전 국민
- 남하면 모금목표액 : 3,971,115원
- 모금방법
 - 성금모금 : 모금 후 도내 방송사 성금접수창구 송금
 - ※ 모금내역 방송사 자막 처리
 - 지정기탁 : 현금, 현물 등
- 모금접수처 : 남하면 복지지원담당
- 협조사항 : 마을별/단체별 성금 기탁 홍보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 기부자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소 필수기재

2.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 홍보

[담당: 김이랑 940-7722]

- 지원기간 : 2018년 겨울방학 중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 ※ 지원대상과 증빙서류

지원대상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신청서만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월 기준), 건강보험증 사본등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신청서 -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거창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내용 : 중식지원/단가 4,000원
- 신청 및 문의 : 남하면사무소 복지지원담당 ☎940-7722

3.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협조

[담당: 김이랑 940-7722]

- 추진배경 :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하여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홀로어르신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동절기 노숙인 현장대응반·현장활동팀 운영(거창군청), 노숙인 숙박업소 지정 운영, 독거노인 안부확인(거창노인통합지원센터) 등
- 노숙인 숙박업소 지정 현황

지정업소	주소	연락처
88여인숙 (대표 박영자)	거창읍 시장2길 31-4	☎ 944-7942, 010-3852-7943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현황

담당마을	이름	비고
둔마리, 양항리, 무릉리(양곡, 무릉)	박옥희	거창노인통합지원센터 ☎ 945-3365
무릉리(산포, 월곡), 대야리, 지산리	이혜경	

- 협조사항
- 거리노숙인 발견 또는 피해사례 발생 시 군청(940-3133) 또는 면사무소 연락
- 취약계층 안부확인 및 한파대비 행동요령 홍보(【붙임 1】 참조)

4. 주거급여 신청 홍보 협조

[담당: 김이랑 940-7722]

- 신청기간 : 상시
-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기준 1,943,257원)이하 가구
- 지급기준
- 임차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4인가구 기준 208,000원)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 자가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자가 제외) 등

5.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담당: 임성미 940-7723]

- 일 정 : 2018. 11. 19.(월) ~ 12. 28.(금) [40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19.(월) ~ 12. 20.(목) [32일간]
 - 과태료 경감 : 11. 19.(월) ~ 12. 28.(금) [40일간]
- 조사방법 : 공무원, 마을이장 합동조사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 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홍보(**【붙임 2】 방송문**)

6. 2019년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 김이랑 940-7722]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홀로 어르신 등
- 내 용 : 빨래차량이 마을 방문하여 이불 등 대형빨래 세탁서비스 제공
- 협조사항 : 차량설치 장소 및 급수 제공(수도요금 마을 자체부담) 협조
- 기타문의 : 함양지역자활센터 ☎602-1633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7가지 수칙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 2**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이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3** 야외운동은 이른 아침에는 피하고, 한낮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세요.
-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 6** 보일러 배관 등이 얼었을 경우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서서히 녹이세요.
- 7** 폭설·한파 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로 연락주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 119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은 (중앙응급구조대)에 연락하세요.
- ☎ 129 보건복지콜센터
-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송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11. 19.부터 2018. 12. 28.까지 4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남하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주민등록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적극 신고하여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까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기간 내에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점 조사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 전입자 등입니다.

또한,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조치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하면사무소 복지지원담당(☎940-7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 발 담 당

1. 동절기 농업생산 기반시설관정, 양수장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담당 정연욱 940-7732]

- 기온 급강하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정, 양수장)의 동파방지 위하여 관정, 양수장 점검 실시
- 물빠기, 퇴수밸브열기, 보온대 감기 등의 시설물 정비 조치
- 협조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개발담당으로 통보

2.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협조

[담당 정연욱 940-7732]

- 자동차 전용도로와 산간·교량 결빙구간 감속운행 홍보
- 기온저하에 따른 결빙 우려지역 홍보
- 【붙임 1】 대설 시, 국민행동요령 1부.

3. 동절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권고문 및 안내방송 홍보

[담당 정연욱 940-7732]

- 권고사항
 - 무단횡단 안하기 : 안전한 보행으로 젊은이들의 모범이 돼 주세요.
 -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오른쪽, 왼쪽에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 야간에는 밝은 색 옷을 입어요.
 - 눈오는 날, 비오는 날 운전 안하기(미끄러짐 사고 발생)
 - 야간에는 나들이와 도로상 운행 자제하기
 - 농기계/이륜차/자전거 안전반사지 또는 형광반사지 부착
 - 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버스가 멈추면 일어나세요!
- 협조사항 : 마을회관 게시판 게시 【붙임 2】

4.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사전대비 홍보

[담당 정연욱 940-7732]

- 목적 : 계량기, 수도관, 마을상수도시설의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 예방을 위함
- 한파대비 상수도시설 관리요령 【붙임 3】
- 협조사항 : 동파예방 마을방송 실시 주2회
- 【붙임 4】 마을방송(안) 1부.

<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

○ 차량운전자

-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시다.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등에서는 서행 운전합시다.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 운행합시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삼갑시다.
-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합시다.
- 브레이크 사용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시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시다.

○ 보행자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시다.
- 외출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 착용합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합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합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맙시다.

○ 가정에서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30cm이상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에 눈을 치웁시다.
- 노후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

○ 직장에서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니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수단을 이용합니다.
-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인정신을 발휘합니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농촌에서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의 보호조치를 합니다.
- 비닐찢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
-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디오, TV 등을 청취, 대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말씀을 전합니다.

경상남도 및 경남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각별히 우려됩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특징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고 무단횡단이 가장 많으며, 사망자의 4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에 우리 마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니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오른쪽, 왼쪽에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하시고 야간에는 밝은 색 옷을 입어 주세요.
- 둘째,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운행 중에 역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 셋째, 눈오는 날, 비오는 날은 운전을 자제해 주시고 바깥 나들이도 자제해 주세요. - 미끄럼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 넷째, 농기계와 오토바이, 자전거에는 안전반사지를 꼭 부착하시고, 오토바이(자전거)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다섯째, 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버스가 멈추면 일어나세요.

이상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준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끝으로

- 고령자는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 항상 조심히 보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십시오.
- 마을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 교통사고가 없도록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한 경남! 어르신이 앞장 서 주세요.

사고 사례

- 경남지역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 무단횡단 사고
 - 농기계/이륜차/자전거 운행 중 사고 (후미 추돌 등)
 - 음주하고 농기계/이륜차/자전거 운행 중 사고
 - 버스 안에서 넘어져 크게 다침

권 고 사 항

- **무단횡단 안하기** : 안전한 보행으로 젊은이들의 모범이 돼 주세요.
 -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오른쪽, 왼쪽에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 야간에는 밝은 색 옷을 입어요.
- **눈오는 날, 비오는 날 운전 안하기**(미끄러짐 사고 발생)
 - 야간에는 나들이와 도로상 운행 자제하기
- 농기계/이륜차/자전거 **안전반사지** 또는 **형광반사지** 부착
- 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버스가 멈추면 일어나세요!**
- **음주운전 안하기**
- **운행시 역주행 안하기**
- 이륜차/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하기**(턱끈
조이기)



고령자는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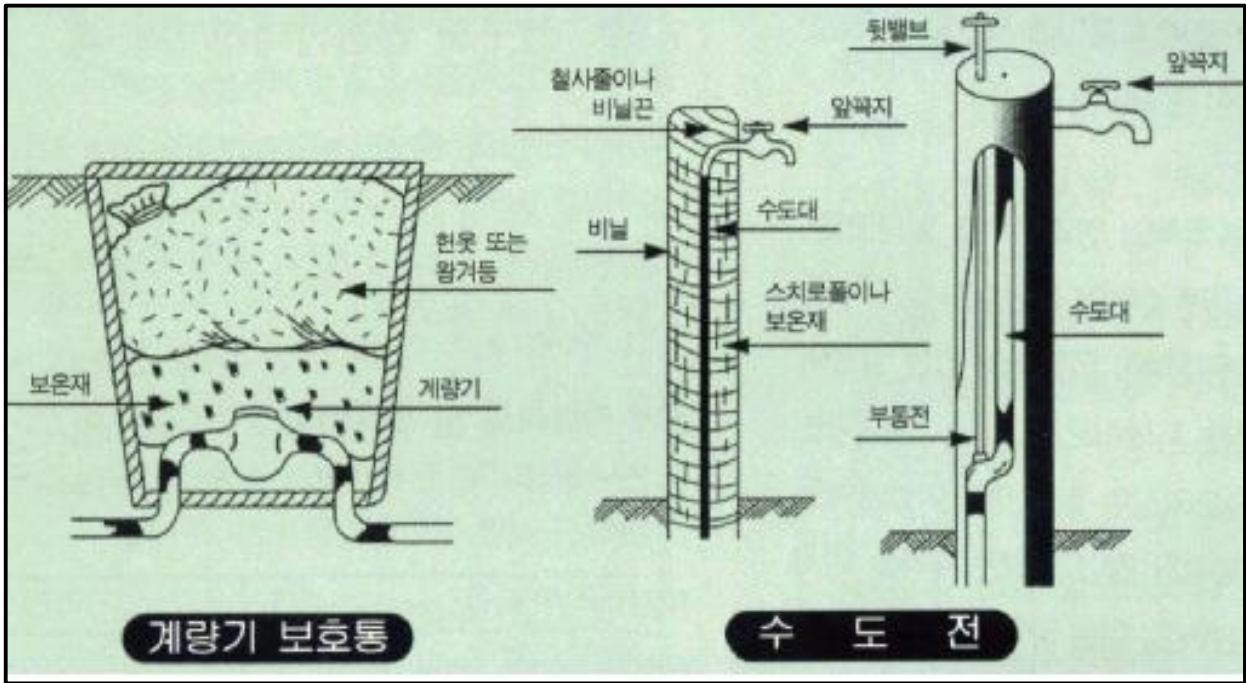
항상 **조심히 보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세요.

자녀에게 안전을 당부하듯 어르신의 안전도 당부 드립니다.

한파대비 상수도시설 관리 요령

1. 수도시설 동파예방 요령

- 계량기 보호통내로 찬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뚜껑부분의 틈새를 막아 밀봉한다.
-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하면 대부분 동파는 예방됩니다.
- 먼저 계량기 실내 누수나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확인한다.
누수시는 즉시 보수를 하고, 지하수 누출시는 방수조치를 한다.
- 계량기 보호통내 보온재(스티로폼)파손여부 확인과 보호통내에는 인조승, 형겅, 폐담요 등으로 찬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 노출된 수도관은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재 등으로 보온하여 외부 찬공기를 차단한다
- 옥외 화장실 등에 노출된 수도관은 형겅 등 보온재로 보온한다.



2. 수도계량기 동파되었을 때 조치 요령

- 헤어드라이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이상으로 녹이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을상수도 계량기 파손 및 옥내배관 동파시 개인조치 및 수리

3. 마을상수도 관정배관 동파예방 요령

- 마을급수시설 장옥내 관정배관 보온은 보온재(열선,이불등)를 설치하여 동파를 예방 조치합니다.

4. 마을상수도 공급이 안될 시 행동요령

- 우선 배수지에 물이 찻는지 확인합니다.
- 배수지에 물이 없을시 취수원(관정,취수보)을 확인합니다.

※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참고사항

현장확인	원 인		조치사항	비 고
배수지 물은 찻으나 급수가 안될시	급수관로에 공기 유입		소화전 열어 공기제거	
	급수관로 동결		관 해빙작업	
	수도계량기 이물질로 막힘		수도계량기 분리후 청소	
배수지 물이 없을시	지하수시설	조작판넬 전원이 안될 경우	메인차단기 내렸다 올림	
		조작판넬 전원은 양호하나 펌프 작동이 안될 경우	펌프조작 누전차단기 내렸다 올림	
		정 전	전봇대 휴즈 확인	
	계곡수시설	취수원에 물이 없음 취수구 막힘	취수원 확인	

5. 기타사항

- 관로의 동결시 무리한 작동은 수중모터가 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해동 작업후에 가동하여 정상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업체의 자문을 받는다.
- 연락처 : 다보건설(☎ 942-1261/ ☎ 010-6761-4200/ ☎ 010-8567-0851)

마을방송(안)

○○마을이장입니다.

겨울철 상수도시설의 동파예방을 위하여 거창군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을 전달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량기 보호통 안에는 수건이나 담요 등을 넣어서 단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고,

건물바깥으로 노출된 수도관은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재 등으로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파기간 중에는 수돗물이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는 조금 열어두고 흐르는 수돗물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에는 헤어드라이기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하며, 뜨거운 물로 갑자기 녹이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마당과 건물에 있는 계량기와 배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개인임으로 동파나 파손이 될 경우에는 개인이 수리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여 동파예방을 위해 철저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파예방 홍보 안내문

수도계량기 동파(凍破)예방 안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 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 보내세요.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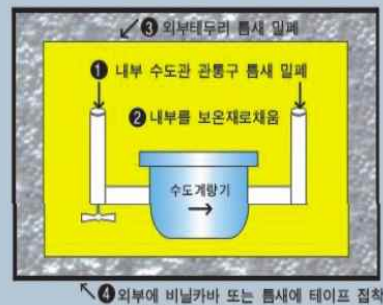
- 1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 2 계량기함(통) 내부를 현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3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4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계량기보호함 보온 방법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벽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 1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 2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940-8410)

1. 2019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 정영선 940-7743]

- 신청기한 : 2018. 12. 31.(월) 까지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자재 원료, 천적(25종)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필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정하여 지원
 - ※ 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 중이나 임야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인삼 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관리 신고 농지(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2. 2018년산 밭 식량작물(밀, 두류, 서류, 잡곡류) 생산량 조사 협조

[담당: 정영선 940-7743]

- 기 한 : 2018. 12. 26.(수)까지
- 대상작물 : 밀 두류(팥 녹두, 기타두류), 서류(가을감자, 고구마), 잡곡(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 조사대상
 - 두류·잡곡 : 품목별 재배면적이 165m²(50평)이상인 농가
 - 밀·서류 : 품목별 재배면적이 331m²(100평) 이상인 농가
- 협조사항 : 아래 조사서식에 의거하여 해당 농가 현황 작성 제출
- 조사서식

주소	성명	재배 작물	조사필지			생산량 (kg)
			소재지	지목	재배면적 (m ²)	

3. 과수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보험상품 가입 안내

[담당: 정영선 940-7743]

- 가입품목 : 사과, 배, 단감, 뽕은감
- 가입기한 : 2018. 12. 21.(금)까지
- 가입처 :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 보장내용
 - (적과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적과후) : 태풍, 우박,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 (특 약) : 나무손해보장(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홍보 안내문 : 【붙임 1】 참조

4. 2019년 원예특작분야(국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안내

[담당: 김영광 940-7744]

- 신청기한 : 2019. 1. 3.(목)까지
- 대상사업
 -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신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940-8232) ※ 작목반별 직접제출
- 이장님 협조사항 : 홍보 철저히 하여 신청 누락 농가 방지
- 신청서 및 세부추진계획 : 따로 붙임(문서함), 남하면 홈페이지 참조

5. 2018년 가축 통계조사 실시 안내

[담당: 김영광 940-7744]

가축통계조사는 관내 가축의 사육 가구수, 사육마릿수, 성별·연령별 마릿수 등을 파악하여 축산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 2018년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장님들께서는 기한 내 자료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9. 1. 10.(목)까지
- 조사대상 : 주요가축 및 기타가축
 - 주요가축 : 한육우, 젓소, 돼지, 닭 (4종)
 - 기타가축 : 마필, 산양, 염소(유산양 포함),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지렁이, 기러기 (17종)
- 조사방법 : 행정통계를 위한 전수조사
- 기 준 일 : 2018. 12. 1. (토)
- 조사내용 : 축종별 사육 가구수, 사육마릿수, 연령별·성별 마릿수, 종별 마릿수 등
- 조사서식 : 따로 붙임(문서함)

6. 겨울철 축산분야 재해예방 점검계획 및 관리요령 안내

[담당: 김영광 940-7744]

겨울철 축산분야 재해예방 점검계획 및 관리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이장님들께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홍보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일시 : 2018. 12월 ~ 2019. 3월(월 1회 이상 실시)
- 점검사항 :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및 지도
- 점 검 자 : 읍면별 담당자(남하면 : 농업축산과 농업7급 강태규)
- 관리요령 : **【붙임 2】**

7. 무허가 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지원 안내

[담당: 김영광 940-7744]

- 신청기한 : 2018. 12. 21.(금)까지
- 지원대상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단, '13.2.20이전 설치된 무허가 축사)
- 지원금액 : 200천원
- 지원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측량비, 설계비 지원
- 제출서류 :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확인서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 4】**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표(측량비, 설계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문 사본(도시건축과에서 농가에게 통보한 공문), 카드 사용 등 측량비나 설계비로 지출된 증명만 있으면 됨.

8.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협조 안내

[담당: 김영광 940-774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발생국여행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현행화 방법을 **【붙임 5】** 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장님들께서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외국인근로자의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협조 요청 안내

[담당: 김영광 940-7744]

중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축산관계자로 등록된 외국인근로자가 고국 등 가축전염병발생국을 다녀온 후 입국 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항만 국경검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님들께서는 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검역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고용주(농장주)의 「고용인 축산관계자 등록」에 대한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940-8144)
- 제출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붙임 6】**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100 ~ 500만원)

10. 2018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 나눔카드) 대상가구 신청 안내

[담당: 박원섭 940-7742]

- 신청기한 : 2018. 12. 20.(목) 까지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31만원)
- 카드발송 : 2019. 1월 중
- 카드 사용기간 : 카드교부시점 ~ '19. 2. 28.
- 유의사항 : 본 사업 지원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서 : 산업경제담당 비치

11. 마을별 농산부산물 공동소각 일정 안내

[담당: 박원섭 940-7742]

- 기 간 : 2018. 12. 21. ~ 12. 27.
- 추진내용 : 마을별 농산부산물(깻대, 고춧대 등)을 공동소각 일정에 따라 공동소각 장소를 선정하여 감시원·진화장비 입회 하 소각
 ※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불가
- 협조사항
 - 마을별 소각장소 선정 및 소각대상물질 수집
 - 공동소각 당일 마을이장, 소각물 주인 입회
 - 마을주민 홍보 철저
 ⇒ 공동소각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소각 일체금지
- 마을별 일정

마을명	일자	시간	비고
상촌	12. 21.(금)	09:00 ~ 10:00	일정은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대곡		10:00 ~ 11:00	
양곡		11:00 ~ 12:00	
아주	12. 22.(토)	09:00 ~ 10:00	
내곡		10:00 ~ 11:00	
대촌	12. 23.(일)	09:00 ~ 10:00	
신촌		10:00 ~ 11:00	
안흥		11:00 ~ 12:00	
무릉	12. 24.(월)	09:00 ~ 10:00	
월곡		10:00 ~ 11:00	
산포		11:00 ~ 12:00	
대야	12. 25.(화)	09:00 ~ 10:00	
오가		10:00 ~ 11:00	
용동		11:00 ~ 12:00	
가천	12. 26.(수)	09:00 ~ 10:00	
자하		10:00 ~ 11:00	
신기		11:00 ~ 12:00	
장전	12. 27.(목)	09:00 ~ 10:00	
천동		10:00 ~ 11:00	
대사		11:00 ~ 12:00	

12. 산불예방 안내 및 마을방송 협조

[담당: 박원섭 940-7742]

최근 농번기에 돌입하여 각종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 안내 및 마을방송문, 산불 과태료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마을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발생 주요 원인
 - 입산자 실화(37%),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31%), 주택·보일러 화재(3%), 기타(29%)
- 소각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 효과 : 없음(0%)
 - 논·밭두렁 소각시 해충류는 11%방제가 되나, 농사에 도움이 되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습니다.
 - 영농부산물인 벼짚, 들깨대, 콩대는 태우지 말고 토양에 되돌려 주어야 유기물이 풍부하여 영농에 도움이 됨(태우면 유기물이 사라져 손해임)
- 산불방지 협조사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
 - 화목보일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타고 남은 재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화재위험이 없는 곳에 잘 관리해 주세요.
 -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마세요
-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 홍보 : **【불입 7】**
 - 과실로 산불은 낸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 제57조 - 과태료) : 50만원
- 산불예방 홍보 마을방송문

방 송 안

○○마을 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 산불을 예방합시다.

- 논·밭두렁, 농부산물을 함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는 불씨를 갖고 들어가지 맙시다.
-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맙시다
- 산밑이나 산림 가까이에는 불을 놓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들어가지 맙시다.

산불을 발견 시는 국번없이 119 또는
면사무소 940-7710으로 신고 바랍니다.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과태료 20만원,
허가 없이 산림 내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이상은 ○○마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 안내

[담당: 박원섭 940-7742]

- 운영기간 : 2018. 11. 19. ~ 12. 28.(6주간) / 월~금, 09 ~ 18시
- 운영내용
 - 방치된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 및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으로 분리배출 등
 - 마을별 폐비닐 순회 수거
- 협조사항
 - 수거당일 영농폐기물 수거반, 마을이장 동반 수거 협조
 - 마을주민 홍보 철저
 - ⇒ 일반농가 : 수거 당일 마을 공동 집하장에 분리배출
 - ⇒ 고령농가 등 거동불편 농가 : 농가 경작지 인근 농로 한 곳에 분리 적재
- 마을별 순회 일정

마을명	일자	비고
용동	12. 19.(수)	일정은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가천	12. 20.(목)	
자하	12. 21.(금)	
신기	12. 24.(월)	
장전	12. 26.(수)	
천동	12. 27.(목)	
대사	12. 28.(금)	

14. 2018년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 신갑숙 940-7741]

- 신청기한 : 2018. 12. 20.(목)까지
 - ※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나 면에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택배 완료 농가는 빠른시일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에서 거창농산물(가공제외)을 재배하는 개인농가
 - 농지원부 등 1차적으로 확인 가능한 농가
 - ※ 2017년 사과만 한정에서 2018년도는 전농산물로 확대(가공 및 규격박스 미사용은 제외)
- 지원한도(연간) : 개인 30만원 150건(택배 1건당 2천원 지원)
- 택배지역 : 관외지역(거창지역 제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신청서식 비치
- 청구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청구서 제출서류 아래 참조

- 지급방식 : 증빙자료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청구시 읍·면에서 지급)
- 지급처리 절차
 - 농가신청 → 신청확인(읍·면) → 사업시행(개별농가)→택배완료
 - 증빙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 지원금 입금
-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서 및 이행서약서
 - 청구서 : 택배비 청구서(면사무소 비치), 증빙자료(택배회사 확인 도장
날인된 택배운송내역서 또는 택배송장, 농산물 택배사진 1장, 통장사본 등)
- ※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신선농산물 공동브랜드 택배비 지원사업(농업기술센터 지급)과 병행할 수 있으나 합산금액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30만원이하로 지원받은 농가는 30만원에서 공제한 만큼 지원
 - 예) 거창농산물 택배비 30만원 받을시, 20만원을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가능함(단,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시)
 - “거창물”을 통한 농산물판매 물량은 제외(이중지원)
- 이장님 협조사항 : 마을 내 농산물 택배 농가에 홍보 협조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배·단감·곶감
[적과전종합위험]



가입기간

2018. 12. 12. ~ 12. 21
※예산 소진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상재해

적과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후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가입지역

전 국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

상품안내

가입내용

구분	내용
가입품목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가입지역	전국
가입단위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이상
자기부담비율	[과실손해보장] 10%, 15%, 20%, 30% 형 중 선택 [나무손해보장] 5%형 ※ 10%, 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2018. 12. 12. ~ 12. 21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과실 손해 보장	보통 약관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적과종료시점 (단, 사과, 배 는 6월 30일, 단감, 뽕은감은 7월 31일 까지)
		적과종료 이후	태풍(강풍), 우박, 집중 호우	적과종료 이후	이듬해 수확기종료시점(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일소피해		적과종료 이후	이듬해 9월30일
		가을동상해		이듬해 9월1일	이듬해 수확기종료시점 (단, 사과·배는 11월 10일, 단 감·뽕은감은 11월 15일을 초 과할 수 없음)
나무 손해 보장	특별 약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2월 1일 (단, 12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주요개선사항

○ 적과전 감수량 산정 방식 변경

◎ 적과전 사고 인정피해율 선택 없음

※ 인정피해율의 선택 없이 적과전 사고 시 아래와 같이 감수량 산정



$$\text{착과감소량} = \text{평년착과량} - \text{적과후착과량}$$

▶ 보험금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착과감소량이라는 용어 사용

○ 보험금 산출방식의 변경

◎ 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 보험금 산출식



$$\text{보험금} = (\text{착과감소량} - \text{미보상감수량} - \text{자기부담감수량}) \\ \times \text{가입가격} \times 80\%$$

※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특정위험 과실손해보험금

※ 보험금 산출식

$$\text{보험금} = (\text{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text{미보상감수량} \\ - \text{자기부담감수량}) \times \text{가입가격}$$

※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은 적과 후에 조사·산정된 감수량의 합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다만, 착과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을 자기부담감수량에서 제외함.
이때 자기부담감수량은 '0' 보다 작을 수 없음.



▶ **일소피해 · 가을동상해 특약의 주계약 전환**

- ◎ 나무 보장을 제외한 모든 특약(일소피해, 가을동상해)을 주계약으로 전환
- ◎ 단감 · 뽕은감의 가을동상해 보장종료일은 11월 15일로 선택없이 단일화

▶ **일소피해 보장기간 변경**

- ◎ 일소피해의 적과종료 이후 보장시기(보장시작일) 개선

품목	현행	변경
사과 · 배	(Y+1년) 8월 1일	적과종료 이후
단감 · 뽕은감		

▶ **무사고 할인 5% 적용**

- ◎ 전년도 무사고 과수원에 대하여 추가할인 5% 적용

- ※ 전년도 무사고 여부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 할증과 동일하게 과수원 기준으로 적용
- ※ 손해율에 따른 할인 · 할증과 전년도 무사고 할인을 합산한 최대 할인율은 30%임

▶ **사업지역 확대**

- ◎ 사과 · 배 · 단감 · 뽕은감 사업지역 전국으로 확대



적용예시

◎ 보험료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요율 10%, 자기부담비율 20% 가정

$$\frac{\text{보험가입금액}}{1,000\text{만원}} \times \frac{\text{보험요율}}{10\%} = \frac{\text{보험료}}{100\text{만원}} \quad \text{계약자 부담보험료는 20만원 수준}$$

- ※ 보험요율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실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산출된 보험료의 20% 수준

◎ 과실손해 보장 보험금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가격(원/kg) 2,000원, 평년착과량 5,000kg, 자기부담비율 20% 가정
- ▶ 봉동상해 피해 발생으로 인해 적과후착과수 3,000kg
- ▶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인해 감수과실수 1,000kg가 발생한 경우
- ▶ 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left(\frac{\text{착과감소량}}{5,000 - 3,000 = 2,000\text{kg}} - \frac{\text{미보상 감수량}}{0\text{kg}} - \frac{\text{자기부담감수량}}{5,000 \times 20\% = 1,000\text{kg}} \right) \times \frac{\text{가입가격 } 80\%}{2,000 \times 80\% = 1,600\text{원}} = \frac{\text{보험금}}{160\text{만원}}$$

- ▶ 특정위험 과실손해보험금

$$\left(\frac{\text{적과종료 이후 감수량}}{1,000\text{kg}} - \frac{\text{미보상 감수량}}{0\text{kg}} - \frac{\text{자기부담감수량}}{0\text{kg}^*} \right) \times \frac{\text{가입가격}}{2,000\text{원}} = \frac{\text{보험금}}{200\text{만원}}$$

*자기부담금감수량 이상의 착과감소피해로 인하여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감수량 없음

- ▶ 총보험금

$$\frac{\text{착과감소보험금}}{160\text{만원}} + \frac{\text{과실손해보험금}}{200\text{만원}} = \frac{\text{보험금}}{360\text{만원}}$$

- ※ 과실의 개당 무게는 과수원별로 가입 시 정해진 무게로 하며,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무게를 적용
- ※ 가입가격은 피해 입은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적용

◎ 나무손해보장 보험금

-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피해율 20% 가정

$$\frac{\text{보험가입금액}}{5,000\text{만원}} \times \frac{\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20\% - 5\%} = \frac{\text{보험금}}{750\text{만원}}$$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나무) ÷ 실제결과주수

나무손해보장의 자기부담비율 : 5%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 3.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청약의 철회**

일반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6.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담보별미경과비용」을 곱한 금액을 환급(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장기간 종료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 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보험 분쟁 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농·축협 또는 당사(☎1644-8900/인터넷 www.nhfire.co.kr▶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0.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11.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 보험금 지급 시 약관에 따라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준법심의필 201812-007호 | 제작 농업보험지원부(2018. 12)

안내
사항

전화번호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8900 | Fax 02)3786-7660

홈페이지 <http://www.nhfire.co.kr> > 보험상품 > 농작물재해보험

※ 본 안내장은 상품의 주요내용을 밝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항목별 관리요령

○ 축사, 축산시설

- 노후축사, 간이축사 및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의 사전점검 → 버팀
지주 보완(기자재 사전준비)
- 축사내 섯바람 유입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비닐 등 준비 → 특히
재래계사·돈사는 충분한 양 보유
- 축사보온 및 환기시설의 사전점검으로 기온 급강하에 대비 보온
기자재 사전준비
 - 보일러, 난방기(온풍기), 난방용 기름(충분히 보유)
- 급수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 축사, 창고 등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 제설작업
- 축사내부 온도를 높혀 축사 지붕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조치
 - 눈이 녹은 물이 축사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 겨울철 축사 등에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예방 강화
 - 대규모 단지 등 밀집된 축사의 전기·난방시설 점검
 -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화재의 원인 및 예방방법 홍보·교육
-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1주일 정도의 비상 사료 비축

○ 가축

- 어린가축의 설사 호흡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보온·환기시설
수시 점검
- 축사내부, 사료급이·급수시설 청결 유지 및 음수 소독실시
- 차단방역 철저, 위생관리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적기 접종 실시
- 죽은 가축은 피해조사·확인 후 즉시 매몰 또는 소각 처리

□ 축종별 관리요령

○ 소

- 축사의 틈새를 철저히 막아주어 섯바람이 들지 않도록 조치
- 축사의 음용수, 분뇨배수로, 담근먹이 등의 동결 방지
- 강설 및 강수시 피부표면의 물은 얼을 빼앗으므로 가능한 신속히 제거
- 체열 소모는 영양분 손실이 크므로 사료를 10~20% 정도 증량 급여
- 우사내에 유해가스 피해 예방을 위해 분뇨청소와 깔짚을 자주 교체
- 따뜻한 날을 이용 일광욕과 운동, 피부손질을 수시 실시
- 착유기가 얼지 않도록 하고 맥동기와 콤프레셔의 압력을 수시 점검

○ 돼지

- 돈사 보온 및 단열대책 수립
 - 돈사 출입문에 보온덮개 설치로 섯바람 방지
 - 열풍기 및 히터를 설치 가동하고 수시 점검
-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환기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
 - 분만사의 실내온도는 18~22℃ 유지
 - 자돈사는 출생직 후 30℃, 1주일 후 27℃, 이유시 22~25℃ 유지
- 체온유지를 위해 열량소모량이 증가됨을 감안, 사료를 10~20% 증량 급여
- 급수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조치

○ 닭

- 체온유지를 위한 에너지 손실로 생산능력이 저하되므로 보온 관리 철저
 - 계사 틈사이로 섯바람이 들지 않도록 보온덮개 설치
 - 열풍기 및 히터의 가동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상태 유지
- 체온의 손실이 많으므로 사료의 에너지 함량을 높여 급여
- 환기를 철저히 하되 찬공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
- 사육밀도를 10~20%정도 늘려주어 체열발산으로 보온유지
-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시기이므로 철저한 점등 관리를 실시

○ 꿀벌

- 꿀벌의 경우 이동이 빈번하므로 재해예방 및 기상전파 및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평시에 관내 양봉 농가수, 봉상수 등을 미리 파악 → 재해발생시 피해조사 확인 철저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야외에서 월동중인 봉상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꿀벌의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 대설 및 동해 대비 농가 지도·관리 철저
 -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벌통문을 열어두어 벌이 벌통을 빠져나가 동사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 벌통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재로 보강하고, 봉군 세력이 유지되도록 충분한 사료 급여
 - 벌통에 덮인 눈은 신속히 쓸어내도록 조치

【붙임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확인서

농가명		연락처	
농가주소			
축사 소재지			
축사 현황 (무허가 축사면적)	동	m ²	<i>동별로 면적을 자세하게 작성(무허가 축사 면적만 해당)</i>

위와 같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확인합니다.

2018. . .

확인자

○ 농 가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붙임 5】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 퇴사 등으로 정보삭제 희망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시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 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3.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11.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방법

① 검역본부(eminwon.qia.go.kr) 접속



②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시스템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 이동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족의 소유자	가족의 소유자들의 동거가족
가족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가족의 소유자에게 고용된자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족인공수정사
가족방역사	가족방역사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가족시장 종사자	가족분노 수집 운반차
	도축장 종사자

※ 축산관계자 자료는 가족전염병예방법 제6조 가족의 소유자 등의 범위 및 검역 의무에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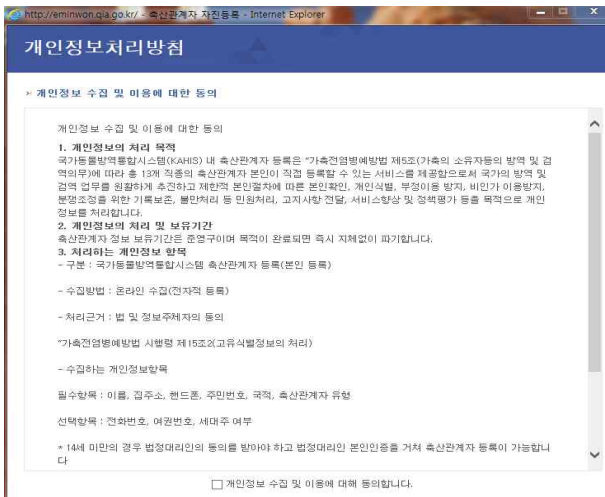
인천공항	032-740-0395	부산항	051-600-0424
김해공항	051-971-1925	인천항	032-722-8237
김포공항	02-2664-2601	동해항, 속초항	033-636-9125
대구공항	053-982-5936	군산항	063-450-9430
부산공항	052-975-5930	평택항, 대산항	031-8853-7707-9
청주공항	043-253-4218-9	경안항	061-790-4921
제주공항	064-746-0761	제주항, 김정항	064-728-5350
양양공항	033-636-9125		

※ 시스템 사용문의 : 전화) 032-740-2999, 이메일) nrae.center@korea.kr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선택

자진등록 선택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④ “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축산관계자유형 Occupation

*핸드폰번호 Mobile Phone No.

*여권번호 Passport No.

*현재주소 Current address

*세대주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가족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수의사

*가족방역사

*동물약품 판매자

*가족시장 종사자

*가족분노 수집 운반차

*도축장 종사자

*축산농가 Livestock farmer

*가족의 소유자등에 고용된 사람

*수의사 Veterinarian

*가족방역사 Field Inspector

*가족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

*원유 수집 운반차 Rawmilk collector & carrier

*동물약품 판매자 Animal medicine seller

*동물약품 제조업(업장) 그레 고용원

*동물약품의 제조업(업장) 그레 고용원

*가족분노 수집 운반차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축산농가 Livestock farmer

*동거가족 Livestock farmer's family member

*축산농가 고용원의 동거가족 Farm employee's family member

*축산인공수정사 A.I. Technician

*가족분노 수집 운반차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사료제조업(업장) 그레 고용원

*사료판매업(업장) 그레 고용원

등록 저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필수선택 사항(성명, 주민번호, 축산관계자유형, 핸드폰번호, 국적, 국내주소)을 모두 입력 후 저장 선택

※ 시스템 사용 문의 : 032-740-2999

【붙임 6】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8. 5.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	휴대폰,	FAX,	
신고대상 인적사항	연 번	1	2	3
	①성명(영어)			
	②국적			
	③외국인 등록번호			
	④여권번호			
	⑤생년월일			
	⑥입국일자			
	⑦체류기간			
	⑧계약기간			
<p>「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일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거 창 군 수 귀하</p>				
<p>※ 유의사항</p> <p>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는 직접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p> <p>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7】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률 제57조, 시행령 제36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산불방지 관련 벌칙규정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4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처벌규정
1.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7년 이상의 징역
2.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에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을 때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1.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때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때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 제3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제24조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4항 제1호	200만원 이하의 벌금
4-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때	산림보호법 제54조 제4항 제2호	200만원 이하의 벌금
5.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때	산림보호법 제54조 제5항	구류 또는 과료
6.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때	산림보호법 제54조 제6항	10년 이하의 징역
7.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